

교훈 : 성실 	<h1>가 정 통 신 문</h1>	제 2023 - 124 호
	<h2>‘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 게시’ 모방 방지 지도 협조 요청</h2>	담당 : 교무기획부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07

학부모님께.

최근 흥기난동 범죄와 함께 살인 예고 등 흉악범죄 발생 예고 글을 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인터넷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살인 예고’ 피의자 대부분 10대...이유는 “장난”
- 너도나도 ‘묻지마 살인예고’ 잡고 보니 중학생... “장난이었다” 등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경찰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그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인 만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모방이나 영웅심리로 장난삼아 올린 글이 하루아침에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8.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장난이 아닌 범죄!

살인 예고글

“ 장난이었는데, 범죄였다. 살인 예고글 ”



살인 예고글 올린 10대



○○서 SNS에 살인예고 글 올린 고교생 검거... "장난으로"
너도나도 '묻지마 살인예고' 잡고보니 중학생.. "장난이었다."

위기의 청소년

ㅋㅋㅋㅋ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뭐~
장난이지~



내가 한 줄
모를거야,
한번쯤은 해도
되지 않을까?

호기심이 생기는걸?

✓ 인스타그램 등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형법 제283조(협박죄) / 형법 제255조(살인예비죄)
- ▶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유사사례를 목격하는 경우 **112**에 즉시 신고!

- ▶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117과 학교전담경찰관(SPO)와 상담 가능!

카카오톡 채널 '스쿨폴넷'을 통해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경기남부경찰청